

# 안전사고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 ‘건축용방호구’ 보급 더딘 이유는

건축주의 안전불감증과 지자체 무관심이 원인  
건축용방호구 강제할 내용 담은 기준 마련 시급  
돌발 상황 많은 공사현장 반영, 촘촘히 설치해야  
‘안전 전문 시민단체 모니터링’ 제도화 목소리도

전력선 주변에서 공사 중인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건축용방호구’ 보급이 더딘 실정이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건축주의 안전불감증과 지자체의 무관심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건축용방호구를 강제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기준 및 보급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13일 충남 서천군 건축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가 발생했다. 이 감전사는 건축용방호구만 제대로 설치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벽작업 발판대과이프 조립 때 위험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며 사전에 조치해야 하지만 비용 절감을 생각하는 건축주로서는 이를 간과하거나 위협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허가조건에 명시된 사항으로 위반은 감리부실로 지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축용방호구만 전력선 주변에 공사 중인 건축 현장 작업자나 장비에 의한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전 재해 및 설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 배전선로에 일시적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절연 커버를 말한다.

건축용 COS(크라이우스위치)덮개, 건축용 LA(피뢰기)덮개, 건축용 데드엔드커버, 건축용 애자덮개, 변압기부싱커버, 케이블헤드커버, 분기고리커버 등을 건축용방호구 7종이라 부른다.

공사현장 안전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 현장 또는 기타공사 현장에서 인체 또는 건축용 자재나 장비 등이 배전선로에 근접·접촉해 위해 요인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일반인 또는 공사 작업자의 안전, 선로고장을 예방하기 위해 건축용방호구를 배전선로에 설치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선 공사 전 건축주가 한전에 요청하면 한전에서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전선용방호관(호스)을 설치한다. 어느 범위까지 건축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밀한 규정이 없어 건축주가 결정한다.

즉, 건축주가 비용을 이유로 일부만 설치할 것을 요구해도 전기공급의무가 있는 한전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한전이 건축주로부터 방호구 설치 비용을 받지만 이는 방호구를 설치하는 전기공사업체에 전달된다.

한전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전이 직접 비용을 지급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으나 한전의 인력 여건상 힘들다.

부산의 모 공사장에서 3개를 설치해야 할 COS 방호구를 1개만 설치한 사례가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건축주가 건축용방호구를 인지하면서도 일부만 설치한 것이다.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 같은 사례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공공 건축물 공사장은 물론 건축주가 영세한 소규모 공사장 등에서 경제적 이유로 건축주가 건축용방호구 설치를 꺼려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빈 곳이 눈에 띈다.

◆세밀한 규정이 없어 건축주를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못해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건축용 방호구에 대한 관리를 지자체에 기대 하기는 힘들다.

대다수의 지자체 건축과에 전기 직렬 공무원이 없어 한전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대다수의 건축과 공무원들은 작업 안전을 위해 건축용방호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공무원이 전기공사에 대한 지식이 없고 건축용방호구를 알지 못하니 전선에 노란호스(전선용 방호관)가 설치된 것만 보고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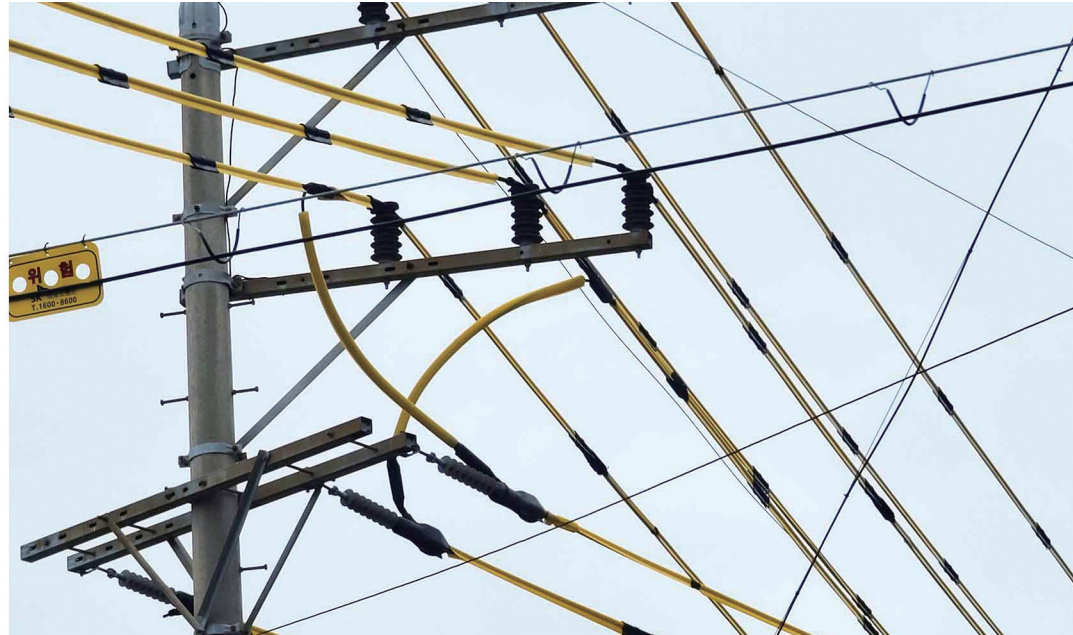
건축용방호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어느 범위까지 건축용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가이다.

건축법 28조에서 ‘건축물의 공사 시



전선용방호관만 설치됐고 COS덮개, 데드엔드커버와 같은 건축용방호구가 없는 공사현장.



공지는 공사 현장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건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공사시공사·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중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공무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례와 학설이 안전과 관련된 규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행정법 전문가의 견해다.

부산시 남구 환경공단 부지에 짓고 있는 ‘민간참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와 경동건설 컨소시엄이 발주처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이 발주처인데도 건축용방호구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다”며 “소규모 민간 건축현장은 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발주처 관계자는 건축용방호구 설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의무사항이 아니며 타워크레인 반경 내에는 설치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련 규정임에도



전선용방호관과 건축용방호구가 제대로 설치된 공사현장.

건축용방호구 설치와 관련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밀하지 않다 보니 발주처에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무를 다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돌발변수 많은 건축 현장의 특수성 반영해야

또 다른 문제는 돌발변수가 많은 공사현장에서 이격거리와 타워크레인 반경을 기준으로 건축용방호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발주처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1~1.5m 이격거리와 타워크레인 반경을 기준으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다른 건축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는 타워크레인 외에도 레미콘펌프카, 카고크레인, 사다리차 등이 돌아다니는데 작업 반경을 예측한다는 것이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축주를 포함한 일반인은 특고압선 2만2900V가 흐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만 위험을 알 수 있는데 이를 건축주의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고압선 감전 사고는 대부분 현장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전기관련 안전설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KEC 한국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기공급이 우선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는 것”이라며 “전기공급보다 안전사고를 중요하

게 생각한다면 공사 현장을 고려해 전선용방호관은 물론 건축용방호구까지 촘촘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한전과 건축주에 맡기면 자의적 해석이 만연한 만큼 ‘안전 전문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광선 부산안실련 대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민원이 속출할 수 있다”면서 “지자체나 건축주에 맡기는 것의 한계가 드러난데다 곳곳의 공사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할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시민단체에 모니터링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전진안 부산안실련 부대표는 “부산 도시공사와 경동건설에서 시행, 시공하는 남구 공사현장은 시내중심가인 데다 도로 옆이다. 그곳에 타워크레인 반경이니 이격거리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안전불감증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며 “경동건설은 물론 부산시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도의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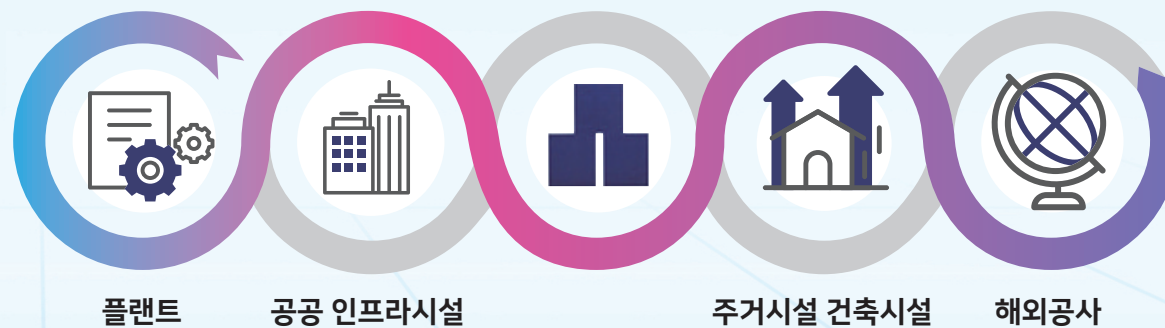
이어 “구형 건축과에서 이를 간과한다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산안실련 전문위원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재현 기자 mahler@

##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최고의비즈니스 성공파트너- 대일전기산업(주)

올해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대일전기산업은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설비공사, 소방공사업 전문시공 베스트 기업입니다.  
주요 구성원들 모두 맡은 바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획득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글로벌을 향한 품질경영에 지속적으로 창의적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전기공사 전문 선도기업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힘찬 도약! 대일전기산업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 주요사업분야



대일전기산업(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70길 5 4층 Tel.02-714-2909 Fax.02-715-2909 E-mail.daeil0910@daum.net